쿠콘 상품 가입신청서

주식회사 쿠콘 귀중

■ 신청구분

신청구분	□ 신규	□ 변경	□ 해지
변경신청	□ 상품 추가 가입 및 일부 해지	□ 기본정보	□ 서비스이용료 납부정보

■ 기본정보

기관명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사업자번호	
업무 담당자	담당자명 : 연락처 :	부서/직책 : 이메일 :	
서비스 관련 SMS 수신 동의	□ 예 □ 아니오 휴대전화번호: -	수신자명:	(서명/인)

■ 상품 이용료 납부정보

납부방법	□ 자동이체 (은행/계좌번호: □ 무통장입금 (별도안내) □ 가상계좌 (별도 안내) ※ 자동이체 선택시 출금은행/계좌번호 및 예금	예금주명:) 라주명을 입력하세요. (아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납부 관련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10일 까지 www.taxbill365.co.kr 에서 발행하며,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자동이체의 경우 매월 10일(토요일 및 휴무일은 익영업일) 자동 출금합니다. 출금일자 전에 납부계좌의 잔액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상계좌 납부의 경우 청구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도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입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담당자	담당자명 : 연락처 :	부서/직책 :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수집 및 이용목적: 쿠콘 상품 이용관계의 설정·유지·관리 및 공지사항 안내, CMS/펌뱅킹 출금이체를 통한 상품 이용료 출금 수집항목: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사업자등록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펌뱅킹 출금이체종료일(해지일)후 5년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펌뱅킹 출금이 체 상품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사업자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펌뱅킹 출금이체 상품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동의함 🗆 동의안함 🗆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펌뱅킹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2022년 8월 일

대표자(신청인) (서명/인)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예금주 (서명/인)

- * 서명 또는 인감은 해당 납부정보 예금계좌의 서명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별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쿠콘 상품 가입신청서

■ 이용 상품

[단위 : 원(VAT별도)/1회]

상품 내역	• ARS(원화, 다국어) : 7,500,000 원 • 모바일보안솔루션 2종(인증, 중계(복사))	•	
	• 휴대폰본인인증	•	
		총 도입비	<u>7,500,000</u> 원

■ 상품 이용료

[단위 : 거 워(VAT볔도)]

■ 85 48 #				[단위 : 건, 원(VAT별도)]	
사프머	이용료 구분				
상품명	월 정액	월 정액 + 건별 과금		건별 과금	
	_200,000원	월 정액 :	200,000 원		
ARS_원화		월 기본 건수 :	2,000 건	<u>55</u> 원	
		초과 건별 :	<u>55</u> 원		
	_200,000원	월 정액 :	200,000 원	<u>85원</u>	
ARS_다국어		월 기본 건수 :	2,000 건		
		초과 건별 :	<u>85</u> 원		
모바일보안솔루션 2종(인증, 중계(복사))	500,000원	월 정액 : 50	00,000원 적용	면제	
휴대폰본인인증				<u>45</u> 원	

■ 특약 및 기타사항

※ 구간 수수료	밓	상품 특	특약 사형	항 적용 시	기입하세요.
----------	---	------	-------	--------	--------

쿠콘 상품 신청 및 이용약관 동의

본인(신청인)은 귀 사의 쿠콘 상품을 신청하며, "쿠콘 상품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8 월 일

대표자(신청인)

(서명/인)

공급자: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디지털타워 19층 | 주식회사 쿠콘



본 약관은 쿠콘 상품 이용기관과 주식회사 쿠콘(이하 "쿠콘"이라 한다.)간에 상품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 ① 쿠콘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이란 "쿠콘"에서 정보를 제공 또는 중계하는 상품으로서 "쿠콘 상품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상품을 말한다.
- ② "이용기관"이란 "상품"을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쿠콘 상품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2조. (약관개정 및 효력)

- 게는 "다른" 이용기관"이 쿠콘 상품 가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를 "쿠콘"에 제출하여 "쿠콘"이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쿠콘"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 무슨 는 합니적인 자료가 있는 영구 작년의 뉴세에 된한 답할, 영도용(현영이용복한 및 영도모모호 중에 된한 답할 중 된민답당할 뒤레이지 않는 함뒤에서 본 작년을 개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 약관 시행일 직전 1개월간 쿠콘닷넷(https://www.coocon.net)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이용기관"이 개정약관 시행일 전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이용기관"이 "상품"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변경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이
- 용기관이 개정약관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기관" 또는 "쿠콘"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제3조 (상품 이용 및 계약의 해지)
 ① "이용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쿠콘"이 통지한 날로부터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이용기관"과 "쿠콘"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이용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등에 대하여 "쿠콘"이 승인한 날로부터 1년까지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본 계약 종료 (해지)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에 의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쿠콘"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상품" 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 중점 그 단근한 이용을 취해하는 형취을 한 8부 2)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발생 시 3)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또는 파산,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 회사정리, 화의 등의 절차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구 받고도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5) "상품" 이용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 5) 6)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사유를 첨부한 신청이 확인될 경우 7)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 8) 관련 법령의 개정, 감독기관의 지시. 은행. 카드사 등 정보제공기관의 정책변경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④ "이용기관"은 "상품"의 일부 또는 전체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쿠콘"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4조 (변경신청)

...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1) "상품" 추가 가입 및 일부 해지 2) "상품" 이용료 출금정보
- 3) "이용기관"의 기본정보(예: 회사명, 주소,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담당자, 연락처 등)

제5조 (양사 의무)

- ① "상품"을 "이용기관"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쿠콘"은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장애처리 및 시스템 운영 업무
- 2) 은행, 카드사 등 정보 제공기관 관리 및 정보 송수신 중계처리 업무 3) 기타 "사용자"가 "상품"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이용기관"은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본 이용약관 준수
 - 2) 지정된 기일까지 상품 이용료 납부
- 3) 기업정보 변경 시 변경내용 통보 등

제6조 (도입비 및 상품 이용료)

- (1) "도입비"란 "이용기관"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쿠콘"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가입비용으로 최초 1회 청구하며, 가입시점에 "쿠콘"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상품 이용료"란 "이용기관"이 "상품"을 이용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③ "상품 이용료"는 기본료와 건별 수수료로 구성되며, 매월 10일 "신청서"상에 기재된 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성품 이용료 은 기본료와 건널 수무료로 구성되다, 배혈 10월 신청서 성에 기세된 출급세화에서 사용 출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상품 이용료"는 가입월과 정지 또는 해지월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적용 한다.(1개월 30일 적용)
 ⑤ "신청서"에서 정한 "상품 이용료"는 사용기간 중이라도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이용기관"과 "쿠콘"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⑥ "쿠콘"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품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이용기관"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이용기관"이 변경된 "상품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행일 전일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기관"이 동 시행일 전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에는 "상품 이용료" 변경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쿠콘"은 변경된 "상품 이용료"를 시행일에 적용한다.
 ② "이용기관"이 전항에 따라 "상품" 이용료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기관" 또는 "쿠콘"은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

본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쿠콘"의 소유이며, "이용기관"은 계약기간 동안 "상품"에 대한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한 사용권을 갖는다.

제8조 (전산시스템 설치 및 운영)

상품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기관"의 시스템운영은 "이용기관"의 책임으로 하고, "쿠콘"의 운영지원은 "쿠콘"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 (비밀유지)

"쿠콘"과 ["]이용기관"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본 계약의 목적달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10조 (양도제한 및 손해배상)

- "'크론'과 "이용기관"은 보다"이 보다 보다 "이용"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본 약관상의 권리나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② "쿠콘"과 "이용기관"은 본 약관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단, "쿠콘"의 손해배상책임은 "쿠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1년간의 "상품 이용료"를 한도로 한다. ③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도 계약 종료 이전에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는 그 이행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
- ④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기타 합리적인 지배 범위 밖의 사유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 제11조 (기타)
 ① "쿠콘"과 "이용기관"은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로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③ "쿠코"의 "이용기관"에 대한 통지(고지)는 서면 또는 "신청서"상에 기재된 "이용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하며, "이용기관"은 "신청서"상의 "이용기관" 관련 정보(담당자 이메일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쿠코"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용기관"이 변경사항을 "쿠코"에 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쿠코"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본 약관의 일부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주무부처의 조치(명령)에 따라 무효로 인정될 경우 해당 조항만이 그 효력을 상실하고, 당사자들의 본래의 의도 및 관련 법령에 합치
- 되게 재작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감독기관 등의 법령, 규정 등의 변경으로 업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 "쿠콘"과 "이용기관"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항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⑦ "상품"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쿠콘"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인은 귀 사의 "쿠콘 상품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쿠콘 지급결제 상품 세부약정

본 약정은 쿠콘 상품 "이용기관"과 주식회사 쿠콘(이하 "쿠콘" 이라 함)간에 쿠콘 상품 이용약관에 추가하여 지급결제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다.

제 1장 총 칙

제1조 (용어의 정의)

- () "지급결제 상품"이란 "쿠콘"이 "이용기관"에 제공하는 출금이체, 입금이체, 가상계좌, 조회, COATM, 부가 전자금융, 계좌간편결제 등의 업무를 말하며, 실시간(Real Time) 또는 일괄(Batch) 등의 지급결제 상품(이하 "상품" 이라 함)을 말한다.
- ② "중계서비스"란 "이용기관"이 "상품"을 제공받기 위해 "제휴금융회사"와 직접 계약 후 "쿠콘"으로 시스템 연계를 요청한 서비스를 말한다.
- ③ "PG서비스"란 "쿠콘"이 "상품"을 "이용기관"에 제공함에 있어 "쿠콘"의 제휴된 금융회사 및 제휴 결제사를 대표(대신)하여 "이용기관"과 계약체결 및 거래대금 정산업 무 등 재판매업무(Payment Gateway)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④ "클라우드상품"이란 "쿠콘"이 "상품"을 "이용기관"에 제공함에 있어 "쿠콘"의 제휴된 금융회사의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여, "이용기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 상품을 말한다.
- ⑤ "사용자"란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송금, 결제, 충전,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⑥ "협력사"란 "쿠콘"이 "COATM"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제휴한 "CD/ATM"을 설치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 ① "제휴금융회사"란 "이용기관"은 직접 또는 "쿠콘"을 통해 "상품"을 제공받고자 제휴하는 금융회사를 의미한다. ⑧ "제휴심용평가기관"이란 "쿠콘"이 제휴되지 않은 금융회사의 "예금주실명조회"를 위해 '쿠콘"이 제휴한 신용평가기관을 의미한다.
- ⑨ "운영자금" 이란 "이용기관"의 사용자가 현금 입출금을 하기 위해 "이용기관"이 "쿠콘"에 제공하는 자금을 말한다.
- ⑩ "모계좌"란 "제휴금융회사"에 "상품"을 위해 개설된 "이용기관" 계좌 또는 "PG"인 경우 "쿠콘"의 자금정산 계좌를 의미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 ① "이용기관"은 "지급결제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자" 관리 및 "사용자" 관련 내부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1) "지급결제 상품" 업무와 관련한 내부업무 전산개발 및 운영

 - 2) "상품"별 또는 "제휴금융회사"별 계약 및 계좌운영관리 3) "이용기관"과 "쿠콘"간 대외연계시스템에 온라인 회선접속•관리
 - 4) "지급결제 상품"의 적합한 운영 및 마케팅, 기타 행정지원
 - 5) "상품" 관련 대고객 민원발생 시 적극적 해결 및 차단 등 해소
- ② "쿠콘"은 "지급결제 상품"과 관련하여 "중계서비스"와 "PG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하며, 다음사항을 이행한다. 1) 각 시스템의 구축 및 "상품" 관련 업무 최신상태 유지

 - 2) "상품"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전산개발 및 운영 3) "상품" 관련 자금정산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제3조 (통신망의 구성 및 운영)

- ③ "이용기관"과 "쿠콘"간의 상호 전산시스템 접속에 따른 전용회선 관련 비용은 "이용기관"에서 부담하다.

제4조 (거래내역 확인)

- ① "이용기관"과 "쿠콘"은 "상품"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 내용을 상호 연결된 전산 시스템으로 출력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양사간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② "이용기관"은 "사용자"가 "상품" 거래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교부한다. ③ 본 조 제 1항에 의한 처리결과의 확인사항 중 결과조회 및 처리결과의 전송 내용은 "제휴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의 처리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④ 본 조 제 1항과 제 2항에 의한 처리결과의 확인 사항 중 "이용기관"이 전송한 내용 또는 거래지시가 실제 처리내용과 상이한 때에는 "제휴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최종 적인 처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쿠콘"이 "이용기관" 또는 "사용자"에게 통지한다.

제 2장 출금이체 상품

제5조 (출금이체 상품의 범위)

- ① "출금이체 성품"이라 함은 "이용기관"의 요청에 따라 "쿠콘"이 "제휴금융회사" 전산망을 이용하여 "이용기관"의 "사용자"로부터 수납대금을 실시간(Real Time) 또는 일괄(Batch)로 집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이용기관"은 "상품"을 직접 이용해야 하며, "쿠콘"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및 "상품"과 관련된 개별 약관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 1) "사용자"으로부터 출금동의서 접수 완료한 건에 대해서만 "상품" 이용
- 2)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출금동의서 접수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내부업무 전산개발 및 운영
- 4) "사용자" 등에 대한 관리 의무

제6조 (출금동의 및 출금이체 상품 신규, 변경, 해지 관리)

- ① "이용기관"은 "사용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체를 포함), 예금주 실명을 확인한 후 반드시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 또는 전화 녹취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출금동의서(출금이체 약관, 동의서를 포함)를 받아야 한다. 다만, 출금이체 신청자와 예금주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
- ② "이용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출금이체거래의 신규,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사용자" 출금계좌 등을 변경할 때에는 해지 처리 후 신규 신청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③ "쿠콘"은 본 조 제 2항의 해지 등록한 계좌에 대하여 "이용기관"이 출금이체 청구를 하더라도 인출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출금이체 PG 서비스)

- ① "쿠콘"과 "이용기관"은 "PG서비스"로, "사용자"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쿠콘"의 "모계좌"로 집금되고 나면 "이용기관"이 지정한 "모계좌"로 정산주기에 맞춰 정산업 무를 수행한다.
- ③ "쿠콘"은 착오인출·오용 및 기타의 사고 등 이체 의뢰 이전에 "이용기관"에서 검증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쿠콘"은 상호 합의에 정한 방법으로 "상품"을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로 하며, 이로 인하여 "이용기관" 또는 "사용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쿠콘"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 출금계좌의 지급 가능 잔액이 이체 의뢰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 2) 이체한도를 초과한 이체 지시가 있는 경우
 - 3)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된 경우
 - 4) 출금계좌에 대하여 거래일에 예금 잔액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 5) 출금이체 신청서에 수록된 계좌가 아닌 경우
 - 6) 입금 및 출금계좌에 대하여 법적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상품 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이용기관"은 출금동의서를 철회 또는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고, "사용자"가 동 거래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할 경우 지체없이 응한다.
- ⑥ "이용기관"은 "쿠콘"의 "제휴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으로부터 출금동의서 원본 조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이용기관"은 지체없이 응한다.

제 3장 입금이체 상품

제8조 (입금이체 상품 범위)

- ① "입금이체 상품"이라 함은 "이용기관"의 요청에 따라 "쿠콘"이 "제휴금융회사"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이용기관"의 각종 지급금을 실시간(Real Time) 또는 일괄(Batch) 로 지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② "이용기관"은 "상품"을 직접 이용해야 하며, "쿠콘"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및 "상품"과 관련된 개별 약관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이용기관"은 각종 지급금을 지급(송금)요청할 경우에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정한 포맷에 따라 "쿠콘"과 연결된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송 2) "쿠콘"은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각종 지급(송금)금에 대해서 "제휴금융회사"로 전송 및 처리 후 회신된 결과를 "이용기관"로 전송

제9조 (입금이체 PG 서비스)

- ① "쿠콘"이 "이용기관"의 자금 지급을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용기관"에게 자금을 예치하는 "충전가상계좌"를 부여하여 충전한 후 충전된 자금 한도 내에서 다수에게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 ② "쿠콘"은 상호 합의에 정한 방법으로 "상품"을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로 하며, 이로 인하여 "이용기관" 또는 "사용자" 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쿠콘"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충전계좌"의 이체 한도 금액이 송금 요청 금액의 합계액보다 적을 경우

 - 2) 송금 요청 계좌가 없거나 거래중지 계좌에 편입 되었을 경우
 - 3) "충전계좌" 또는 송금 요청 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 되었을 경우
- ③ "쿠콘"은 "충전계좌"에 법적 또는 거래가 제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이용기관"에게 통보하고 다른 정상적인 수단을 통한 해결을 최우선적 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미처리로 남은 금액을 "이용기관"에 반환한다.

제 4장 가상계좌 상품

제10조 (가상계좌 상품 범위)

- ① "가상계좌 상품"이라 함은 "이용기관"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사용자"에게 부여하여 금융회사 입금채널을 통해 입금이 되면, 그 결과를 "이용기관"에 통보해주는 업무를
- ② "이용기관"은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를 "이용기관"의 책임 하에 관리 하며, "쿠콘"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및 "상품"과 관련된 개별 약관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다 음 사항을 이행한다.
 - 1) "상품" 이용목적에 맞는 적합한 운영
 - 2) 민원 발생 (보이스피싱 등) 시 적극적 해결 및 민원차단 및 억제를 위한 방안 마련 시행
 - 3) 불건전 거래 또는 민원 야기가 예상되는 곳에 이용금지
- ③ 이용금지에도 불구하고 이용에 따른 불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쿠콘"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가상계좌 PG 서비스)

- ① "쿠콘"이 "이용기관"의 자금관리수납을 용이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용기관"의 "사용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입금을 하면 입금된 자금이 "쿠콘"의 "모계좌"로 집금처리되고, 익일 "쿠콘"의 "모계좌"에서 "이용기관"이 지정한 "모계좌"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이용기관"은 제공받은 "가상계좌"가 "사용자"의 계좌로 인식되게끔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 (중) 6점 을 제공함에 제공기를 든 제공으로 기공계되기 제공자 그 개최로 근국되게 된 중에서는 근로다. ③ "쿠콘"은 "이용기관"에 부여한 가상계좌로 입금된 자금에 대해서 "이용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④ "쿠콘"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유로 "쿠콘"의 "모계좌"에 지급정지 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을 보류하며, 지급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정산 하기로 한다. 단, 지급정지 된 금액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쿠콘"의 "모계좌"에서 환출되어 피해자에게 환급 시 "이용기관"에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장 조회 상품

제12조 (조회 상품 범위)

- '에 '조회 상품'이라 함은 "이용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용기관"의 "사용자"로 부터 취득한 "사용자" 정보에 대한 정당성을 "쿠콘"이 제휴한 "제휴금융회사" 또는 "제휴신용 평가기관"을 통해 "이용기관"에 결과를 통보해주는 업무를 말한다. "쿠콘"은 "예금주성명조회", "예금주실명조회", "수표조회"에 대한 "조회 상품"을 제공한다.
 ② "이용기관"은 "조회상품"을 요청한 "사용자"의 정보를 "이용기관"의 책임하에 관리해야 하며, "쿠콘"의 전자금융거래 상품과 연계하여 활용 시 사전 합의해야 한다.
 ③ "이용기관"은 본 "상품"을 직접 이용해야 하며, "쿠콘"의 서면동의 없이 "상품"을 재판매 하는 등 사전에 이용한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약공기는 본 본 경음 글 직접 학생에 하기, 가는 즉 자연공의 없악 경음 글 세년에 하는 중 자연에 학생은 접기 최 공포로 자생하려지는 본 분의. ④ "쿠콘"은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로 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쿠콘"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 "사용자" 정보 등의 요청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 2) "이용기관"의 전산 및 네트워크 장애로 확인 자료를 수신 하지 못한 경우
- 3) "쿠콘"은 "이용그린"이 건송한 자료에 의거 "상품"을 제공하며, 건송된 자료 등이 착오, 오용, 유용 및 위조, 변조, "사용자"의 악의적인 이용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장 COATM 상품

제13조 (COATM 상품 범위)

- ① "COATM 상품"이라 함은 "이용기관"의 요청에 따라 "쿠콘"이 "협력사"와 구축한 중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이용기관 " 의 "사용자"의 현금을 실시간(Real Time)으로
- "CD/ATM"통해 입출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쿠콘"은 "이용기관"의 "사용자"가 "CD/ATM"을 통한 거래정보 발생 시, "이용기관"에 전송하여 승인한 건에 한하여 "CD/ATM" 입출금 거래를 제공한다.
 ③ "쿠콘"은 "CD/ATM" 입출금 거래를 사전에 정한 업무처리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력사"의 시스템 변경 및 정기점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상
- 황 발생시에는 "상품"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기관"에 사전 통보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으로 사전 통보가 어려울 시 조치 후 통보한다. ④ "CD/ATM"을 통한 "이용기관"의 "사용자" 이용 한도금액에 관한 사항은 "협력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협력사"의 "CD/ATM"을 통한 1회 현금 입출금 한도는 1만원 단위로 최고 30만원이다. ⑤ "이용기관"은 "COATM 상품" 개시 5영업일 전 까지 양사 상호 협의된 "운영자금"을 "쿠콘" 에 제공하여야 하고, "CD/ATM"에서 인출된 자금을 "쿠콘"이 지정한 "모계
- 좌"로 정산주기에 맞춰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제7장 계좌간편결제

제14조 (계좌간편결제 서비스)

- ① "계좌간편결제"란 "이용기관 " 의 결제 요청에 따라 " 쿠콘"이 "사용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방식으로 출금동의서를 받아 등록한 계좌에서

- ③ "쿠콘"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유로 "쿠콘"의 "모계좌"에 지급정지 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을 보류하며, 지급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정산 하기로 한다. 단, 지급정지 된 금액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쿠콘"의 "모계좌"에서 환출되어 피해자에게 환급 시 "이용기관" 에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장 비플페이PG

제15조 (비플페이PG 서비스)

- 에 하늘에에 다음 된 어름기된 되 날에 요중에 따라 다른 되 제휴 글레이는 라는 라는 게임하는 된 게임하는 된 기계를 하는 것이 바로 "이용기관"이 지정한 "모계좌"로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결제 취소 거래는 당일 결제 거래에 한하여 취소 가능하며 "쿠콘"은 "이용기관" 정산 시 차감하여 정산한다.
- ③ 결제 취소 시 결제수단의 성격에 따라 원거래를 취소하거나 "사용자"의 등록계좌로 지급한다. 취소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 ③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유로 "쿠콘" 또는 제1항의 제휴 결제사의 "모계좌"에 지급성지 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을 보류하며, 지급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정산하기로 한다. 단, 지급정지 된 금액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쿠콘" 또는 제1항의 제휴 결제사의 "모계좌"에서 환출되어 피해자에게 환급 시 "이용기 관"에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COCON

제9장 공통사항

제16조 (업무처리시간)

업무처리 시간은 "쿠콘"의 "제휴금융회사" 상품 제공시간 및 전자금융 공동망의 운영시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기관"과 "쿠콘"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

제17조 (상품 제공 및 운영)

- ... ①"상품"은 제15조에서 정한 업무처리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쿠콘" 또는 "상품" 제공 "제휴금융회사"의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 협조요청 등 불 가피한 상황 발생시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이용기관"에 통지토록 한다. ② 장애발생시 "이용기관"과 "쿠콘"은 즉각적인 복구작업을 통해 "상품" 장애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

- 제18조 (상호협조 및 의무) ① "이용기관"과 "구콘"은 "상품" 이용(제공) 과정에서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 사항을 "상품"의 이용(제공)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이용기관"은 본 "상품"을 직접 이용해야 하며, "쿠콘"의 서면동의 없이 "상품"을 재판매 하는 등 사전에 허용한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준용)

본 세부약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쿠콘 상품 이용약관, 쿠콘닷넷(https://www.coocon.net) 홈페이지에 기재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준용하기로 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본인은 귀 사의 "쿠콘 상품 지급결제 세부약정"에 동의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8 월 일 2022년

대표자(신청인) (서명/인)